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21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하하고, 법 제 9조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할 때 「주민등록법」상 주소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에 따른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받을 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2. 13. ~ 2. 27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전자신고”를 “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(이하 이 조에서 “전자신고등”이라 한다)”로, “신고”를 “신고 또는 청구”로, “전자신고”를 “전자신고등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.

제19조의3 중 “영 제43조의3제2항”을 “영 제43조의3제2항본문”으로, “21”을 “18”로 한다.

제31조제2항 중 “제62조의2제5항”을 “제62조의2제6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16호의2서식, 별지 제24호서식, 별지 제28호의2서식, 별지 제4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식에 관한 적용례)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)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9조의3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송달장소(변경)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신 고 인	성 명	주민등록번호	
	상 호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 또는 영업소		
	전화번호	전자우편주소	

적용할 우편물 선택 : ☐ 1. 모든 우편물 ☐ 2. 해당 사업장 관련 우편물

신 고 내 용	신고(변경)사유
	☐ 신고(변경) 전 장소
	☐ 신고(변경) 후 장소
	- 구분 : ☐ 1. 주민등록상 주소 ☐ 2. 기타 (전화번호 :) ※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한 경우 전입신고(「주민등록법」 제16조)를 통해 주소가 이전되면 송달장소가 이전된 주소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아래의 동의함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「국세기본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
		없 음

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(경정)청구서				처리기간	
				2개월	
청 구 인	① 성 명		② 주 민 등 록 번 호	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	
			-		
	④ 주소(거소) 또는 영업소			⑤ 전화번호	
	⑥ 상 호				

신 고 내 용

⑦ 법 정 신 고 일			⑧ 최 초 신 고 일	
⑨ 경정(결정)청구이유				
구	분	최 초 신 고	경 정(결 정) 청 구	
⑩ 세	목			
⑪ 과 세 표 준 금 액				
⑫ 산 출 세 액				
⑬ 가 산 세 액				
⑭ 공제 및 감면세액				
⑮ 납 부 할 세 액				
⑯ 국세환급금 계좌신고	거래은행	은행 지점	계좌번호	
⑰ 환 급 받 을 세 액				

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, 「소득세법」 제118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청구인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경정(결정)청구 사유 증명자료	수 수 료
		없 음

위 임 장 위 임 장	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	위 임 자 (신 청 인)	대 리 인				
		구 분	성 명	사업장 소재지	사업자등록번호 (전자우편)	전화번호 (휴대전화번호)
	(서명 또는 인)	[]세 무 사 []공인회계사 []변 호 사	(서명 또는 인)	((우)		

접수증(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(경정)청구서)

성 명		주 소	
구 비 서 류	결정(경정)청구사유 증명자료 []	접 수 자	
		접 수 일 인	

210mm×297mm(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)

작성 방법

1. 청구인란의 인적사항(① ~ ⑥)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 다만, 합병 등으로 인하여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()안에 함께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⑫ 산출세액: 각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.
3. ⑬ 가산세액: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, 가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4. ⑭ 공제 및 감면세액: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세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.
5. ⑮ 납부할 세액: ⑫ 산출세액에 ⑬ 가산세액을 더하고, ⑭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.
6. ⑯ 국세환급금 계좌신고: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, 환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"계좌개설신고서"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7.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구비서류(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)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.
 - 가.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:

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수정 지급조서, 당초분·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(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),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
 - 나.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:

당초분·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, 당초분·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(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),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
 - 다.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:

당초분·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, 원천징수대상자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,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

보내는 사람

받는 사람

국세환급금 통지서

일련번호		관리번호(우체국용)	
환 급 금 권 리 자	상호(법인명)	환 급 관 서 세무서장	
	성명(대표자)		
	사업자등록번호		
	주민등록번호		
	주소(사업장)		
환 급 내 용	환급사유	지급요구일	
	세목	지급요구번호	
	환급금	환 급 금 받 는 방 법	
	환급가산금		
	환급금계		
총당금액			

귀하(귀사)에게 채납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채납액 등에 충당한 후 잔액이 환급되며, 총당금액의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내드리는 국세환급금 총당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**채납징세과 환급 담당자**(전화:)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안 내 말 씀

- 국세환급금은 귀하(귀사)가 우리 세무서에 납부하신 세금 중 과다납부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돌려드리는 것입니다.
- 환급금 받는 방법에 “**신고한 환급계좌로 국세환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.**” 라고 적힌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귀하(귀사)가 신고한 **계좌로 이체 입금**한 것이며, **계좌 오류로 미지급된 경우**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환급금 받는 방법에 “**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.**” 라고 적힌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우체국(우편취급소 제외)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니 아래 서류를 가지고 **가까운 우체국**에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본인(법인의 대표자 포함)이 직접 받을 때: 신분증과 이 통지서(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)
 - 나. 대리인이 받을 때: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, 이 통지서, 위임장
 - * 법인 추가서류: 인감증명서(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), 사업자등록증
 - * 임의단체 추가서류: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, 정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
- 만약, 우체국을 방문하여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뒷면의 「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」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귀하(귀사)의 계좌에 입금됩니다.
- 지급요구일은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로서,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나면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금 지급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받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.

● 근거: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36조

아래 서식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국세환급금을 받을 때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.

위 임 장					영 수 증 서				
아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선정 하고 국세환급금의 수령을 위임합니다.					국세환급금 원정 위 금액을 수령합니다. 년 월 일				
위 임 인	성 명 (법인명)	인감 날인	주 민 (사업자) 등록번호		받 는 사 람	성 명		주 민	
	주 소					(서명 또는 인)	등록번호		
대 리 인	성 명		주 민		사 람	주 소			
	(서명 또는 인)	등록번호				(전화:)			

국세환급금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납세자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으려면 아래 서식을 작성한 후 절취하여 우리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.

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				
환급금권리자 (납 세 자)	상 호(성 명)		주민(사업자)등록번호	
	주소(사업장)	(전화:)		
환급내용	환 급 금		세 목	
	지급요구일		지급요구번호	
예금계좌	금융회사명	은행 (우체국)		
	계 좌 번 호			
※ 환급금권리자 및 환급내용에 관한 사항은 앞면의 “국세환급금 통지서”에 기재된 사항을 옮겨 적으시기 바랍니다. 위의 국세환급금을 기재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으로 환급금이 발생할 때는 이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: 본인 명의(법인명)의 통장 사본 1부, 신분증 사본 1부 년 월 일 신고인: (서명 또는 인)				
세무서장 귀하				

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5일
------	-----	------	----

신청인 (청구인)	성 명 (상 호)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
	주 소 (사업장) (전화번호:)	
	휴대전화번호	

사건번호 (접수번호)	
처분내용	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(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, 기분,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) ※ 연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

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.

1.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
2. 법인이 아닐 것
3.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
4. 상속세, 증여세,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일 것

「국세기본법」 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며, 재결청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청구인)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
지방국세청장
국세청장
조세심판원장
귀하

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

요청대상	청구사건	접수번호		접수일		
		처분청				
		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(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, 기분, 세목 및 세액 등을 적습니다) ※ _____년도 _____기분 _____세 _____원 부과처분				
	청구인	성명	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	
		상호		전화번호 (휴대전화번호)		
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(전자우편)		(☎ -)				
요청담당자	○○○과 ○○○ (전화:)					

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(또는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날)

의
의
의

요청 사유(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)
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2조의2제2항제1호 및 제6항에 따라 위 심판청구사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.

이
의
의

국세청장

직인

조세심판원장 귀하

210mm×297mm(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)